KOSHA GUIDE

C - 85 - 2013

중지를 준용하여 안전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(8)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·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도록 안전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9)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할 경우에 넘어지거나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계기준, 장비 매뉴얼과 제원표,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야 하며,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원의 자격, 자동차 검사증, 보험 가입을 확인하여야 한다.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원 조종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: 2종 보통 자동차운전 면허증
- (나) 총중량 10톤 미만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: 1종 보통 자동차운전 면허증
- (다) 총중량 10톤 이상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: 1종 대형 자동차운전 면허증
- (10) 작업장소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지력이 확보 되었는지 검토하고, 지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.
- (11) 부적절한 줄걸이 방법에 의하여 자재의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걸이 작업준수 사항 및 인양용구의 안전유의 사항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및 KOSHA Guide C-48-2012 (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)을 따른다.

6.2 트럭 탑재형 크레인 설치

6.2.1 트럭 탑재형 크레인 설치시 준수사항

(1)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중량물 작업계획 등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중량에 맞는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